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15 선고 2020나23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7. 15.

제1 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가합11071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C과 D 사이에 E 골프사업에 관하여 2015. 8. 1. 체결된 골프연습장 동업계약과 2015. 12. 31. 체결된 지분이전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E 골프사업에 관하여 진정한 등록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체육시설업 명의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부분 애초의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를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체육시설업’ 명의변경신고절차 이행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 1) 제1심 판결 제4쪽 아래에서 일곱 번째 행의 ‘이 사건 추심명령’을 ‘추심명령(원고를 채권자, C을 채무자로 한 청주지방법원 2015타채656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다)’으로 고친다.
- 2)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심에서 명의변경절차의 대상을 ‘사업자등록’에서 ‘체육시설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청구를 바꾸었는바(이처럼 원상회복의 대상만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은 삭제하면서 청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원고의 주장’ 부분으로서 제6쪽 끝 행의 ‘취소되어야 한다.’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명의변경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 3) 제1심 판결 제8쪽 제4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바로 이어서 ‘(오히려 이 법원의 청주시장, 청주시 상당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체육시설업 신고

명의자는 F이고 그 운영권도 현재 F이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의 결론 부분을 삭제한다.

2. 덧붙이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권은 C이 아닌 F의 재산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진, 판사 송석봉, 판사 송혜정